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22.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4월 14일

장주식 의원 외 6인

2. 회 부 일 자 : 2009년 4월 16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4. 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인물 대체)

### 1. 제안이유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간 명칭상이로 인하여 조례불일치가 일어나는바,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명칭을 의미에 맞도록 변경하고, 조례의 자구를 조례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자구변경 : 과장(담당관) → 담당관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 이 개정조례안은 장주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불부합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의거 조례제명과 직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 이외 내용변동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

###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Ⅴ. 토론 요지 : “생 략 ”

###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Ⅸ.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과장(담당관)”을 “담당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u>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li> <li>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li> <li>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u>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li> <li>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li> <li>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li> </ol>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li> </ol>

<p>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p> <p>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p> <p>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u>과장(담당관)</u>이 된다.</p>	<p>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p> <p>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p> <p>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u>담당관</u>이 된다.</p>
---	---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9.5.24>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 ⑦항 생략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2.24>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2.24>

###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